#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44

발의연월일: 2024. 8. 19.

발 의 자:김성원·박덕흠·고동진

김태호 · 최수진 · 김선교

임이자 · 김소희 · 박충권

정희용 · 김종양 · 이종배

최은석 · 안철수 · 조승환

김용태 의원(16인)

### 제안이유

2022년 기준 청년 고용률은 46.6%에 그치고,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이 약 5%에 달함. 이러한 청년의 사회적 취약 성은 청년의 자립이 어려움을 보여줌.

그런데 현재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률에서 통합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과 보호를 통해 그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자립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취약청년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안 제1조).
-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취약청년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를 둠(안 제8조).
- 라.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청년자립준 비학교를 설치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를 운영하도 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취약청년 자립준비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8조).

##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취약청년의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과 취약청년에 대한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 2. "취약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그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부채 등 재산상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청년
    -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년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가정의 청년. 이 경우 청년의 출생지를 불문한다.
    - 다. 부, 모 또는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청년
    - 라.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간호 ·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청년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인 청 년
- 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 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 아.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수행이나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청 년 자립지원 및 보호(이하 "자립지원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종합적 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 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 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에 관한 사업의 개발 · 운영 방안
- 3.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에 관한 전달체계 구축
- 4.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5.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 6. 그 밖에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청년기본법」 제8조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을 위한 정 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약청년의 고용, 주거, 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 ① 취약청년의 자립지원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 로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취약청년 자립지원등과 관련된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 2. 위촉직 위원: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취약청년 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3.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청년자립준비학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준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청년자립준비학교(이하 "청년자립준비학교"라 한다)를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청년자립준비학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법률, 주거, 취업 등의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 2. 제11조에 따른 사회적 가족제도의 운영
  - 3. 그 밖에 취약청년의 자립준비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자립준비학교의 설치·운영을 관련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청년자립준비학교의 설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청년자립준비학교의 설치·운영기준,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사회적 가족제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 취업, 경제 등의 분야에서 자립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자립지원상 담자"라 한다)와 취약청년을 연결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 공하는 사회적 가족제도(이하 "사회적 가족제도"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자립지원상담자의 자격, 사회적 가족제도의 운영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청년자립준비주택 공급·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 청년이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자 립준비주택(이하 "청년자립준비주택"이라 한다)을 공급·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청년자립준비주택을 공급 ·운영하는 경우 공급·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청년자립준비주택의 공급·운영 시 취약청년의 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급·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심리상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청년과 취약청년 가족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서비스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수

- 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청년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지역사회 취약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취약청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취약청년 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취약청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약청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청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이용할 수

-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취약청년의 자립지원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8조(박람회의 개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청년의 자립지원등을 위하여 주거, 심리, 건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약청년 자립준비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 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취약청년 자립지원등, 취약청년에 대한 상담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